

##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공고 제2017-31호

「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교공동체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15일  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

### 「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」 일부개정안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가.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한국교육과정의 교육 기회 박탈을 예방하고자 입학자격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

나. 보통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비자 갱신을 유효기간 2개월 전에 실시하고 있어 현 규칙상 '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'의 조건은 한국교육과정을 원하는 재외국민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입학자격 조건 중 “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”를 “합법적으로 취학할 수 있는 자”로 조정(안 제14조제1항)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함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(참조 : 사무국, 전화 6741-0778, 팩스 6467-125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무국

- 주소 : 71 BUKIT TINGGI ROAD, SINGAPORE 289759

- Email : admin@skis.kr

- 붙임 1.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 일부개정안 1부.  
2. 의견 제출 서식 1부.

##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 일부개정안
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합법적인 싱가포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"를 "합법적으로 취학할 수 있는 자"로 하고 제6항 "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"를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4조(입학자격)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자녀 또는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의 자녀로 입학 또는 전·편입학일 현재 <u>합법적인 싱가포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②~⑤ (생략)</p> <p>⑥ &lt;신설&gt;</p> | <p>제14조(입학자격)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자녀 또는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의 자녀로 입학 또는 전·편입학일 현재 <u>합법적으로 취학할 수 있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</p> |
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

| 개정안     | 수정요구안   | 수정사유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제0조(00) | 제0조(00) | ○<br>- |

제출자 성 명 :  
주 소 :  
전화번호 :